



리보금리 (LIBOR) 산출 중단에 따른 대체지표금리 선정·적용 안내

1. 리보금리(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란?

리보금리는 국내 외화대출 및 국제 금융거래에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금리로서, 영국 런던의 은행간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하며, 영국 런던의 우량 은행들(정보제공은행)이 호가를 제출하여 산출됩니다.

※ 대표적인 리보금리 적용 통화: 미달러, 파운드, 유로, 엔, 스위스프랑

※ 7개 만기: 익일, 1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당행과 귀사 간의 변동금리 대출 거래를 위한 금융계약에서도 리보금리가 기준금리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2. 리보금리 산출 중단 배경 및 경과

2012년 리보금리 조작 사건 발생으로 리보금리의 신뢰도가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초 거래의 유동성 부족 등 호가금리의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리보금리를 규율하는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2022년부터는 정보제공은행들의 호가금리 제출을 더 이상 강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2017년 7월).

이에 따라, 영국 금융감독청, 영국 영란은행(Bank of England), 미국 ARRC (Alternative Reference Rate Committee) 등 주요 선진국 금융당국에서는 2022년부터 리보금리 산출이 영구적으로 중단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으며, 2021년 말 이전까지 리보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기존 금융계약은 기준금리를 대체지표금리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지표금리로는 무위험금리(Risk Free Rate, RFR)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및 공시 현황은 하단의 참고란에 정리된 바와 같습니다.

3. 리보금리 산출 중단에 대한 대응

리보금리 산출이 중단될 경우, 당행과 귀사가 체결한 기존 금융계약 중 만기가 2022년 이후에 도래하는 계약에서 기준금리를 산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리보금리 산출 중단에 대비하여, 리보금리를 대신할 대체지표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서 체결이 필요합니다.

당행과 귀사가 체결한 기존 금융계약에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동 약관 제3조 제1항 및 제6항에 근거하여 당행은 이자의 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당행은 대체지표금리로 사용될 무위험금리로서 미달러화의 경우 아래에서 설명하는 SOFR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당행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행이 제공하는 수정계약서안을 귀사와의 협의를 통해 체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수정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상세한 대체조항(fallback language)을 마련해 둘 것입니다.

가. 리보금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대체지표금리로의 전환 조건) : 아래 각 호 중 하나

- ① 리보금리 산출기관(ICE Benchmark Administration Limited, IBA), 규제기관(영국 금융감독청) 또는 중앙은행(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이 리보금리 산출 중단을 공식 선언하는 경우
- ② 리보금리 규제기관(영국 금융감독청)이 리보금리의 대표성 상실을 선언하는 경우
- ③ 당행이 리보금리 적용 중단을 결정하고 대체지표금리를 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나. 리보금리를 대체할 대체지표금리 : 아래 각 호의 순서로 적용

- 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산출하는 SOFR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기간물 기대금리
- ② SOFR 익일물 금리(단리 또는 복리 방식으로 산출) : 어느 날의 익일물 SOFR를 단리 또는 복리 방식으로 산출하여 이자기일의 일정기간 이전에 이자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함
- ③ 기타 당행이 정하는 대체지표금리(관련 금융당국의 선정이나 추천 또는 시장에서 통용되거나 통용되어 가는 금리를 적절히 고려함)

다. 리보금리와 대체지표금리 간 기간위험 차이와 신용위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차이 조정 : 아래 각 호의 순서로 적용

- ① 관련 금융당국에 의해 선정 또는 추천된 스프레드 조정방법
- ② ISDA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용어정의를 참조하는 파생상품거래의 대체율에 적용되는 스프레드 조정방법
- ③ 기타 당행이 정하는 방법(관련 금융당국의 선정이나 추천 또는 시장에서 통용되거나 통용되어 가는 방법을 적절히 고려함)



4. 유의사항

당행과 귀사 간에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리보금리 산출이 중단되는 경우, 당행과 귀사 간 기존에 체결한 금융계약에서 기준금리를 산출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보금리 산출 중단 전에 기준금리를 대체지표금리로 전환하는 절차를 정해 둘 필요가 있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일 당행과 귀사 간에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리보금리 산출이 중단되는 경우, 당행은 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이 고지문에서 설명하고 안내한 내용대로 귀사에게 대체지표금리의 선정 및 적용을 통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체지표금리의 적용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될 것입니다(약관 제3조 제6항). 만일 이로 인해 귀사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 귀사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귀사는 해지 즉시 반환채무를 이행해야 함),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이 적용되고, 귀사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당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약관 제3조 제8항).

리보금리를 대체지표금리인 무위험금리로 전환하는 경우, 이러한 무위험금리는 통상 리보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며, 리보금리와 대체지표금리(무위험금리) 간 기간위험 차이와 신용위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차이 조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조정을 반영하더라도 기존에 사용되던 리보금리와 동일한 금리로 대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대체지표금리에 차이 조정을 반영한 최종 이자율 수준이 기존에 리보금리를 사용할 때의 이자율 수준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귀사의 재무적 상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지표금리인 무위험금리의 기간물 기대금리가 산출되지 않아 익일물 무위험금리의 사후적 평균금리를 산출해야 하는 경우, 금리의 산출방식이 변경됨으로 인해 금리를 결정하고 운영하는 절차와 시스템이 변경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지표금리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고지문은 귀사에 대한 법적·재정적·세무적·회계적 자문이 아니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안내문입니다. 귀사는 스스로의 검토 및 판단 하에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 공동 주관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산하 「리보금리 대응TF」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리보금리 대응TF 홈페이지 바로가기(PC) :

<https://www.kfb.or.kr/libor/main/index.html>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 공시·자료실 > 리보금리 대응TF 경로로 접속 가능

(참고) 주요국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및 공시 현황

국가	대체대상 지표금리	무위험 지표금리	지표산출기관	공시 시기
미국	USD LIBOR	SOFR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NY Fed	'18.4월
영국	GBP LIBOR	SONIA (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Bank Of England	'18.4월
EU	EUR LIBOR, EURIBOR, EONIA	ESTR (Euro Short Term Rate)	European Central Bank	'19.10월
스위스	CHF LIBOR	SARON (Swiss Average Rate Overnight)	SIX증권거래소	'09.8월
일본	JPY LIBOR, TIBOR	TONAR (Tokyo Overnight Average)	Bank Of Japan	'92.12월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주요국 지표금리 개혁 추진경과 및 국내 시사점)